

전주지방법원 2024. 4. 4 선고 2023가단31602 판결 [건물명도(인도)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14.

판 결 선 고 2024. 4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39,500,000원 및 2023. 5. 12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
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이관용

별지